

발간등록번호

11-1471000-000327-01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식약처

# 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안내서

2018. 11

국민결愛 110  
정부민원 110

부패·공약침해 신고  
1398





# Contents

## Chapter 01 수입식품 개요

---

1. 수입식품 안전 관리 체계	2
2. 수입식품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내용	3
3. 영업등록 및 변경 신고등 처리절차	6
4. 해외제조업소 등록절차	8
5. 우수수입업소와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도	10
6. 위생교육 및 안전교육	11

## Chapter 02 수입식품 신고 및 주의사항

---

1. 수입식품 검사 절차	14
2. 수입식품 신고대상	15
3. 수입(전산) 신고 방법	16
4. 가공식품(첨가물) 신고요령 및 검사방법	17
5. 기구·용기·포장 신고요령 및 검사방법	19
6. 수입 수산물 신고요령	21
7. 수입 축산물 신고요령	24

## Chapter 03 기타 관련 서류

---

1. 국외검사기관 성적서/유기농 관련 서류	28
2. 유전자변형식품(GMO) 관련 서류	29
3.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서류	31
4. 주문자부착상품(OEM) 관련 서류	33



## Chapter 04 영업자 준수사항별 행정처분 기준

---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준수사항	36
2.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자 및 인터넷 구매대행업자 준수사항	37
3. 수입식품등 보관업자 준수사항	38

## Chapter 05 수입식품법 및 허위과대광고 Q&A

---

1. 수입식품법 관련 Q&A	40
2. 허위·과대광고 Q&A	44
3.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52

## Chapter 부록 과대광고 법령 및 수입검사 부서

---

1. 허위과대광고 관련 법령	62
2. 식약처 수입식품 검사부서 및 관할구역	68



## 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안내서



Chapter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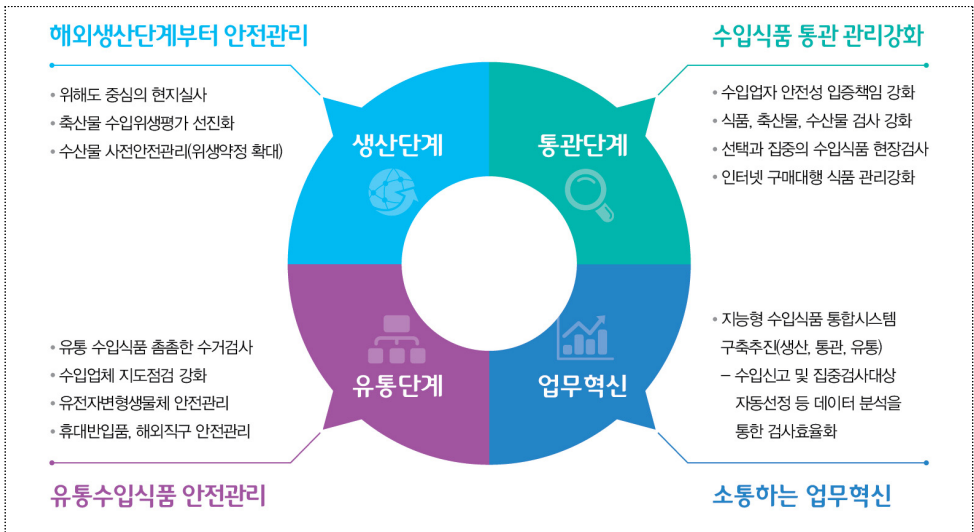
## 수입식품 개요



# 01

## 수입식품 안전 관리 체계

- 수입식품안전관리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① 수입 전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② 통관(수입)단계 검사(정밀검사, 무작위표본 검사, 현장검사, 서류검사) ③ 유통단계 수거·검사로 3중 안전관리 체계로 운영



### ● 영업의 종류

업종	범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위하여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 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수입식품등 보관업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영업

\* 주요위반행위로는 허위과대광고, 영업자준수사항, 기준규격(부적합), 위생교육 미 이수, 시설기준 위반 등임

## 02

## 수입식품법 시행에 따른 주요변경내용

## 1 신설된 제도

- 해외제조업소 사전 등록 의무화

구 분	내 용
등록	수입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이하 "수입자등")가 수입신고 7일전 등록 신청서 작성하여 우편 등 또는 시스템으로 신청
변경	해외제조업체 명칭, 소재지, 영업의 종류 변경 시 신청
갱신	등록 유효기간(2년) 만료되기 7일전부터 갱신 신청
등록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
수입신고 거부	자료제출 거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 제출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강화

- 가공식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실사를 건강기능식품 등 전(全) 수입식품으로 확대
-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중단 조치

- 현지실사 위탁을 위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당연 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외는 지정기준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하도록 함
-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은 현지실사 결과 등을 식약처장에게 보고

-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및 해외작업장 등록제 실시

- 수입위생평가는 수출국 정부의 축산물의 수입허용 요청, 국제기준의 변경 등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실시
- ※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수입위생요건을 국가별 축산물별로 정하고 요건에 충족하는 축산물만 수입 가능

- 해외작업장 등록은 작업장 설치·운영자가 축산물 수입신고 전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작업장 등록신청

● 수입식품 관련 영업의 통합 및 신설

- ‘식품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및 ‘축산물 수입·판매업’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통합

-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보관업’ 신설

## 2 개선 보완된 제도

● 우수수입업소 등록제 확대

- 현행 가공식품 수입업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소까지 확대

\* 우수수입업소는 우수영업자로 분류하여 통관 및 출입 검사 시 우대 조치

● 검사명령제 및 교육명령제 확대

- 현행 가공식품 수입업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수입업소까지 확대

\* (검사명령제) 위해우려 식품에 대해 수입자에게 미리 검사하도록 명령

\* (교육명령제) 부적합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였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일정시간(3시간 이상) 교육 이수

● 「수입식품 유통이력추적관리제」 강화

- 영유아식, 일정 매출액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등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하여야 하는 수입식품등과 단계별 의무화시기를 정함

구 분	시행 전	시행 후 ('16.2월)	
수입 前 단 계	제조업소등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공식품·농산물 : 등록 불필요</li> <li>축산물 : 위생조건체결국 작업장 등록 * 식육 및 비열균가공품</li> <li>수산물 : 위생약정국*, 부산물가공장 등록 * 중국, 러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에콰도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해외 제조업소 등록 -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 신고 거부</li> </ul>
	현지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공식품·농산물 : 임의 실시 - 상대국(업소) 거부 시 조치수단 없음</li> <li>건강기능식품 : 미 실시</li> <li>축산물 및 수산물 : 일부* 실시 * 식육 및 비열균가공품</li> <li>수산물 : 일부* 실시 * 등록된 위생약정국, 부산물가공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해외 제조업소 현지 실사 - 현지실사 거부 또는 현지실사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 가능</li> </ul>
통 관 단 계	수입업체 및 제품 차등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없음 * 부적합 제품 및 수입자 검사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수입업체 및 제품 - (수입업체) 우수, 일반, 특별관리 - (제품) 1등급, 2등급, 3등급</li> </ul>
	검사명령 (위해우려 식품 수입자에게 미리 검사토록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 수입자 -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수입자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식품 수입자 -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수입자 까지 확대</li> </ul>
유 통 단 계	이력추적 (의무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식, 건강기능식품 * 매출액에 따라 '19년까지 단계적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식,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분유)</li> </ul>
	유통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수입자를 3개 영업으로 구분·관리 -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구분 관리 * 축산물수입판매업 ** 식품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수입업</li> <li>(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식약처에서 모두 관리</li> <li>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보관업</li> </ul>
	교육명령 (부적합 제품 수입자 교육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식품 수입자 -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수입자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모든 식품 수입자 -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수입자 까지 확대</li> </ul>

## 03

# 영업등록 및 변경 신고등 처리절차

## 1 신규 영업등록

- 영업등록 前 확인사항: 위생교육 이수

구분	기관명	연락처
교육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	☎ 02-3470-8150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031-628-2300
신규(보수)시간	4시간(3시간)	
교육내용	수입식품등의 관련 법령 및 제도, 위생관리, 품질유지, 표시·광고 등	

- 구비서류

영업등록신청서, 보관시설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면허세납부영수증, 교육수료증,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저장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에 한함) 도시철도 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 한함)

- 처리기한: 3일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www.foodsafetykorea.go.kr](http://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신청
  - 식품안전정보포털 > 통합민원상담서비스 >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 수입 식품등 영업등록 신청

## 2 변경등록

- 변경등록 사항: 영업장의 소재지 변경 시
- 변경신고 사항: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보관시설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보관업에 해당)

- 처리기한: 변경등록 3일, 변경신고 3일
- 방문 또는 온라인(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신청
  - 식품안전정보포털 > 통합민원상담서비스 >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 유의사항
  - 개인 및 법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대표자 변경이나 영업소재지 변경이 아니라  
대표자의 자택주소만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대상 아님

### 3 지위승계

- 영업승계: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함
- 신고기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영업등록증 원본, 양수인의 교육이수증
- 처리기한: 3일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신청
  - 식품안전정보포털 > 통합민원서비스 >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 수입식품등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4 폐업신고

- 구비서류: 영업의 폐업신고서, 영업등록증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신청
  - 식품안전정보포털 > 통합민원서비스 >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 수입식품등  
영업의 폐업신고

# 04

## 해외제조업소 등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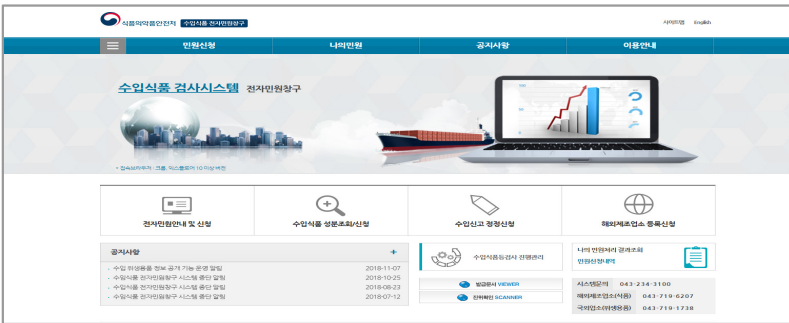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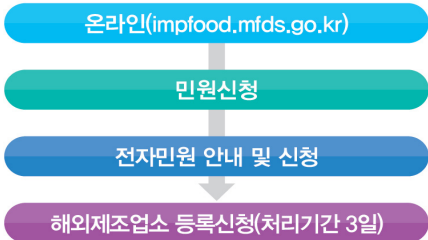
-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신고 7일전까지 해당업소의 정보 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 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 영업의 종류,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예 : HACCP, ISO 등)
- 식품 종류(농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
-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
- 등록하려는 정보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확인
- (수입자가 신청한 경우) 해외 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등록에 동의하였다는 확인

- 신청자: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 또는 수입자
- 온라인 등록절차

### 온라인 신청시 해외제조업소 등록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전자민원실**

사이트맵 [English](#)

---

민원신청
나의민원
공지사항
이용안내

---

민원신청

<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Home > 민원신청 > 전자민원안내 및 신청 >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

» 전자민원안내 및 신청

» 성분조회/신청

» 수입신고경정신청

» 해외제조업소 조회

» 해외작업장 조회

» 위생용품 성분조회/신청

» 위생용품 수입신고경정신청

» 현지실사계획관리

» 현지실사등록관리

**○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 (\* 표시는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 신청인 정보**

신청인 정보 *	(-선택하세요-)	신청인명	
업소명		수입업체 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주소			

- \* 국내 수입 영업자의 경우는 신청인 정보의 '수입자'를 선택하신 후 **수입업체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 농산물 '업소명'은 포장 또는 보관 시설을 관리하는 업체이며, 수입신고 시 '소재지'가 포장장소로 사용됩니다.
- \* 수입신고 시 '수출업소'는 기존 관세청(물관단일창구)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며, 신규 등록 시 수입신고처의 관할 지방청(감사소)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업소 정보**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국가 *		지역 *	
기관	현지실사과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FAX 번호	
사적일		종료일	

- \* 업소정보의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기재사항은 영문(대문자) 기준입니다.
- \* 업소명은 실제 제조공장 을 가진 공장의 가명입니다. 면허차 등의 가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대표자는 해외제조업소(공장) 시설의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 영업정보**

영업의 종류 *	<input type="checkbox"/>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 <input type="checkbox"/> 기구, 용기 포장 제조·가공 <input type="checkbox"/> 농산물 포장 <input type="checkbox"/>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 <input type="checkbox"/> 수산물 제조·가공(선박 및 양식 포함)
수입예정 식품종류 *	<input type="checkbox"/> 농산물 <input type="checkbox"/> 가공식품 <input type="checkbox"/> 가구·용기·포장 <input type="checkbox"/> 수산물 <input type="checkbox"/> 식품첨가물 <input type="checkbox"/> 건강기능식품
관리시스템 여부 *	<input checked="" type="radio"/> 적용안함 <input type="radio"/> 적용
관리시스템	<input type="checkbox"/> HACCP <input type="checkbox"/> ISO 22000 <input type="checkbox"/> 기타
인증 *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본 제조업소등록 시 기재(첨부포함) 인증(서) 내용은 수입신고 시의 표시여부와의 관련없음
인증명	
인증일	

- \* 연유 선택 시 해당 관리시스템 호 사용 가능 가능합니다.
- \* 관리시스템은 해외제조업소에서 안전한 식품을 제조·생산하기 위한 관리 제도(인증 포함) 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 \* 인증은 위의 HACCP 등의 관리시스템이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발생되었는지 여부 및 상세 내역을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 \* 인증이 여러개일 경우 대표인증 인증 하나를 기재 후 하나 이상의 인증서 전자본문(본문)을 첨부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원문) 시 제출)**

허용 파일 확장자 : pdf, hwp, jpg, xls, xlsx, txt, doc, ppt, docx

파일명	파일크기	삭제
(첨부파일 없음)		

**> 첨부파일종류(첨삭사항) : 상기 정보에 대한 정확한 파일을 위해 하단 자료를 구비하고 개선 경우 선택적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 해당 제조업소의 해당국가 발원 영업등록증 사본(영문본만 포함)
- \* 해당 제조업소의 통관서류(공시사항) 사본 또는 발지서(서) 사본
- \* 인증기관(또는 제조업소) 발행한 인증서 사본
- \* 동일 제조업소의 검사실력이 있는 경우, 해당 제조업소 수입신고 실적 이력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  
 상기정보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해외제조업소의 사업자명세서가 위의 등록신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음

▶ 신청
← 이전

구 분	우수수입업소 등록제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
점검주체	수입업소, 식약처	식약처
인정범위	등록된 우수수입업소의 제품	등록제품(수입업체와 관련 없음)
신청자	수입업소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수입자 대신 신청 가능)
점검비용	식약처	신청인(수입자 부담원칙)
우대조치	무작위표본검사 생략,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 게재	무작위표본검사 생략,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 게재
관련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제품명, 원료명 및 제조·가공의 방법</li> <li>-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재질·용도·바탕색 등에 관한 사항</li> <li>-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명칭, 제조·가공의 방법, 원료명 및 그 배합비율</li> </ul>	
제출서류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 결과보고서</li> <li>- 해외제조업소가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식품등을 생산하는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li> <li>-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li> </ul>

## 06

## 위생교육 및 안전교육

구분	식품위생교육	수입식품 안전교육(교육명령)
근거법령	「수입식품법」 제17조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제24조	「수입식품법」 제26조 시행규칙 제45조
소관고시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교육 대상자	영업을 하려는 자	통관단계 부적합 처분 영업자 수거·검사 결과 영업정지 처분 영업자
교육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지정)
교육내용	수입식품 관련 법령 및 제도 식품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 등	수입식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부적합 수입식품 원인규명, 개선조치 방법에 관한 사항
교육시간	신규(4시간), 보수(3시간)	3시간
교육형태	온라인 교육, 집합교육 가능	집합교육(서울, 부산) 온라인교육 신설('18)



## 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안내서

Chapter

# 02

## 수입식품 신고 및 주의사항



# 01

## 수입식품 검사 절차



수입



보세구역 반입



민원인 수입신고

### 서류검사(수입신고내용 검토, 2~3일)

- 1 신고한 내용의 수입관련개요, 제품개요, 제조공정, 원재료명/성분 등 검토
- 2 1항 내용과 전산에 신고된 한글표시사항 일치여부 확인
- 3 제출한 구비서류 검토(해당 되는 경우에 한함)



### 현장검사(3~5일)

- 신고한 한글표시사항과 현품의 수출국표시 및 한글표시사항 일치여부 확인
  - 수출국 표시사항 미표시: 반려
  - 한글표시사항 일부 미표시: 보완
  - 한글표시사항 전량 미표시: 반려
- 수출국 표시와 상이한 보관 방법시 부적합



### 무작위(5일)/정밀검사(10일)

- 기준규격 및 위해정보 사항 검사
  - ※ 「수입식품법」에 정한 수거량 수거
- 검사기관
  - 무작위표본검사·정밀검사: 수입자가 지정한 국내검사기관 및 지방청
- 검사기간
  - \* 가온보존시험대상 15일
  - \*\* 축산물: 무작위표본검사·정밀검사 18일
  - \*\*\*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위해정보 지시 검사 등은 외부검사기관 의뢰 불가



### 검사결과

적합

국내 유통

부적합

반송(반출), 폐기

## 02

## 수입식품 신고대상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신고대상



수입신고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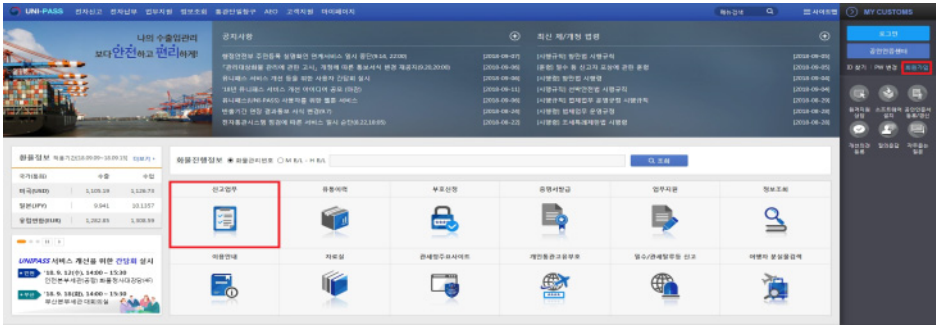
순번	확인사항	관련부서	관련사이트
1	원재료의 식용가능여부	식품기준과	식품안전나라( <a href="http://www.foodsafetykorea.go.kr">http://www.foodsafetykorea.go.kr</a> ) > 식품전문정보 > 식품원료 > 식품원료목록
2	기준 및 규격 적합여부 (농·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 <a href="http://www.foodsafetykorea.go.kr">http://www.foodsafetykorea.go.kr</a> ) > 식품전문정보 > 기준규격정보
3	기준 및 규격 적합여부, 재질명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첨가물기준과	식품안전나라( <a href="http://www.foodsafetykorea.go.kr">http://www.foodsafetykorea.go.kr</a> ) > 식품전문정보 > 기준규격정보
4	한글표시사항 올바른 표시여부 (농·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식품안전표시 인증과	식품안전나라( <a href="http://www.foodsafetykorea.go.kr">http://www.foodsafetykorea.go.kr</a> ) > 식품·안전정보 > 식품표시정보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로부터 제조공정도, 성분(재질)증명서 사전 확인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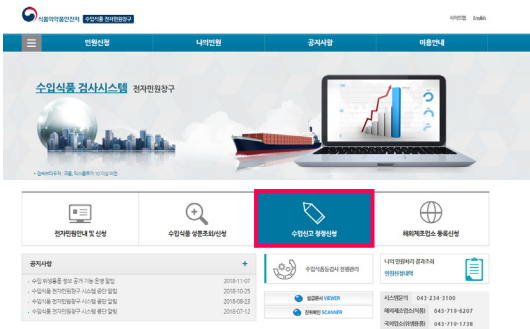
## 수입(전산) 신고 방법

- 1 관세청 UNI-PASS 접속 (<https://unipass.customs.go.kr>)
- 2 사용자등록  
대표자 및 업체정보 등록 → 본인 인증 및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업체 정보 → 부호 및 서비스신청 → SMS 신청 → 승인요청
- 3 홈페이지에서 신고업무(수입신고서) 클릭 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작성



### 수입신고 정정신청 작성 방법 안내

식약처 수입식품 전자민원창구사이트(<https://impfood.mfds.go.kr>)에서 '수입신고 정정신청' 배너 클릭



- ① 정정신청 하고자 하는 신고 건을 접수 번호 혹은 관세청 신청번호로 검색 합니다.
- ② 해당 건이 검색 되면 더블클릭하여 정정신청 내용 창을 엽니다.
- ③ 입력창이 오픈되면 정정항목, 정정 내용 및 사유, 첨부파일 등을 입력 합니다.
- ④ 내용등록이 완료되면 최종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정정신청을 완료 합니다.



## 04

## 가공식품(첨가물) 신고요령 및 검사방법

동일 모션으로 동일 수입자가 수입한 동일 식품은 반드시 수입신고서 1건 신고

- 수송편명 또는 입항일자가 다른 경우 수입신고서 별도 작성
- 동일모션으로 수입된 동일 식품이나, 여러 제조일자(또는 유통기한) 또는 포장단위가 혼재된 경우,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작성 시 3쪽에 모든 제조일자별 총수량, 순중량, 과세가격을 구분 기재
- 동일모션으로 수입된 동일 식품이나, 화물관리번호가 여러 건인 경우,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작성 시 1쪽에 대표 화물관리번호 기재하고 3쪽에 각각 신고

가공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인 경우 원재료명칭(성분코드), 배합비율 기재 및 기구·용기·포장인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명칭(코드) 기재

- 제품 명칭 또는 상품 명칭은 기재해선 안됨 (원료명으로 기재)
- 혼합성분은 하나의 성분이 다른 여러 개의 성분 또는 제품으로 구성된 경우로 성분 코드가 자동으로 부여
- 신고하고자 하는 성분/원료/재질에 코드가 없는 경우, 「식약처 수입식품 전자민원 창구 [https://impfood.mfds.go.kr] 수입식품 성분조회/신청」으로 신청

The screenshot shows the MFDS ImpFood portal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four main service icons: 전자민원안내 및 신청, 수입식품 성분조회/신청 (highlighted in blue), 수입신고 정정신청, and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Below these are smaller icons for 공지사항, 수입식품동시검사 진행관리, and 나의 민원처리 결과조회. A table of public notices is visible, listing items like '수입 위생용품 경보 공개 가능 운영 알림' and their dates. On the right, there are buttons for 발급문서 VIEWER and 관제화인 SCANNER, along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ystem and the national inspection center.

공지사항	발급문서 VIEWER	관제화인 SCANNER
수입 위생용품 경보 공개 가능 운영 알림	2018-11-07	
수입식품 전자민원창구 시스템 중단 알림	2018-10-25	
수입식품 전자민원창구 시스템 중단 알림	2018-08-23	
수입식품 전자민원창구 시스템 중단 알림	2018-07-12	

시스템문의 043-234-3100  
 해외제조업소(식품) 043-719-6207  
 국외업소(위생용품) 043-719-1738

### 동일사동일식품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동일사동일식품등 요건 :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다만, 포도주의 제품명은 제품명에 포함된 제조연도, 숙성연도 또는 알코올 도수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제품명으로 봄

### 검사방법

- (서류검사) 동일사 동일식품등 수입시, 자사제품제조용원료, 외화획득용,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식품등, 정제·가공이 필요한 식품등은 제출된 서류 검사 실시
- (현장검사) 서류검사 대상 중 지방청장이 현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 (정밀검사) 최초로 수입되거나 최초로 수입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후 기준 및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수입식품등,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등,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법 제21조에 따른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수입되는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특별관리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 식품등,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 또는 수출하는 것으로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 05

## 기구·용기·포장 신고요령 및 검사방법

## 수입 신고방법

- 동일 재질로 구성된 제품으로 색상, 크기가 다른 것은 일건으로 신고 가능  
(예시) 도자기제 흰접시와, 노랑밥그릇은 일건으로 신고 가능
- 재질 구성이 다른 제품은 일건으로 수입신고 할 수 없음  
(예시) 물병 재질이 몸체는 PP, 뚜껑은 각각 PE, PS, PET로 구성된 경우  
[PP+PE 제품], [PP+PS 제품], [PP+PET 제품] 3건으로 신고  
(예시) PP+PS+고무제 커피메이커와 PP+PS+PET+고무제 커피메이커는 2건으로 신고
- 여러 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날개 판매가 어려운 세트제품은 일건으로 수입신고
- 제조국, 제조업소, 수입자, 재질 동일하나 바탕색상(무늬) 또는 제품명(모델명)이 다른 기구·용기·포장이 혼재된 경우 가장 대표적인 제품의 제품명을 1쪽에 기재하고, 각 바탕색상(무늬) 또는 제품명은 신고서 양식 3쪽의 향란에 기재
- 식품용 기구는 바탕색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재질별 사진을 첨부

## 재질 신고방법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의 재질과 바탕색상 신고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에 등록된 재질로 신고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에 등록된 재질명이 아닌 경우 제조사로부터 정확한 재질 확인 후 첨가물기준과에 문의하여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공전의 재질명으로 확인
- ‘금속제’라는 재질명은 사용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금속제명으로 신고  
(예시) 스테인레스제, 철(에폭시수지도장)제
- ‘야자잎’, ‘바나나잎’ 등의 자연산물을 기구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천연재질’로 신고

### 동일사동일식품

- 동일사동일식품등 요건 : 제조국·제조업소·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 최초 정밀검사 실적에 서류검사 대상 재질(무착색 유리제 등)이 추가된 기구 등을 수입하는 경우 동일사동일식품등 인정
- 2종류 이상의 재질로 구성된 제품의 일부 재질의 색상이 변경된 경우, 색상이 변경된 재질만 추가로 정밀검사 실시

### 검사방법

- 검사방법 : 바탕색상별, 재질별 검사  
단, 재질과 바탕색이 다양하게 혼합 구성된 하나의 제품(커피메이커 등)의 경우 동일 재질 범위 내에서 바탕색을 혼합하여 검사

기구명	용도	신고 재질 및 바탕색상	검사 재질 및 바탕색상
에스프레소 커피머신 	• 업소용 분쇄한 원두에서 커피 추출	1.ABS(검정) 2.POM(검정) 3.불소수지(흰색) 4.AS(투명) 5.AS(검정) 6.실리콘(흰색) 7.실리콘(검정) 8.PA(검정) 9.PA(아이보리) 10.금속제(동제) 11.금속제(그라인더)	1.ABS(검정) 2.POM(검정) 3.불소수지(흰색) 4.AS(투명, 검정) 5.실리콘(흰색, 검정) 6.PA(아이보리, 검정) 7.금속제(동제, 그라인더)

- 동일 재질로 구성된 제품으로 색상, 크기가 다른 것을 일건 수입 후 일부 재질에서 부적합한 경우 신고 된 일건에 대해 모두 부적합 처리
- 부적합 이력 재질에 대한 수입신고 처리방법  
최초 수입 된 제품의 구성 재질이 일부 부적합 후 동일 제품 재수입 시 전체 재질에 대해 정밀검사 1회 실시, 이후 부적합 재질에 한해서만 4회 추가 정밀검사 실시

## 06

## 수입 수산물 신고요령

## 수입 신고 대상

- 수산동식물 : 활어패류·신선·냉장품·냉동품 및 해조류 다만, 복어는 수입검사 대상 복어 21종에 한함
- 수산동식물 중 단순가공품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탈피·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어란 및 훈제품 포함)

연번	종 류	학 명
1	복섬	<i>Fugu niphobles, Takifugu niphobles</i>
2	흰점복	<i>Fugu poecilonotus, Takifugu poecilonotus</i>
3	줄복	<i>Fugu pardalis, Takifugu pardalis</i>
4	매리복	<i>Fugu vermicularis vermicularis, Takifugu vermicularis snyderi</i>
5	검복	<i>Fugu vermicularis porphyreus, Takifugu porphyreus</i>
6	황복	<i>Fugu ocellatus obscurus, Takifugu obscurus</i>
7	눈볼개복	<i>Fugu chrysops, Takifugu chrysops</i>
8	자주복	<i>Fugu rubripes, Takifugu rubripes</i>
9	검자주복	<i>Fugu rubripes chinensis, Takifugu chinensis</i>
10	까치복	<i>Fugu xanthopterus, Takifugu xanthopterus</i>
11	금밀복	<i>Lagocephalus inermis</i>
12	흰밀복	<i>Lagocephalus wheeleri</i>
13	검은밀복	<i>Lagocephalus gloveri</i>
14	불룩복	<i>Sphoeroides pachygaster, Liosaccus pachygaster</i>
15	삼채복	<i>Fugu flavidus, Takifugu flavidus</i>
16	강담복	<i>ChiLomycterus affinis</i>
17	가시복	<i>Diodon holocanthus</i>
18	브리커가시복	<i>Diodon liturosus</i>
19	취복	<i>Diodon hystrix</i>
20	노란거북복	<i>Ostracion cubicus</i>
21	까칠복	<i>Fugu stictonotus, Takifugu stictonotus</i>

## 수산물과 가공식품의 분류기준

### □ (식품첨가물의 첨가유무에 의한 분류)

- 수산물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
- 식품첨가물의 첨가유무에 의한 분류
- (가공식품) : 가공공정이 없더라도 수산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였다면 가공식품
- (수산물) : 수산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았거나, 첨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세척, 살균 소독 등의 목적이라면 수산물
- 수산물 본래의 성상 및 성질을 유지하는 선에서 신선도 유지를 위해 침지용으로 최소량의 식품을 단순 살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수산물로 판단

### □ (가공처리 여부에 의한 분류)

- (가공식품) : 가공공정을 거친 경우 -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가공, 가열살균 등 현격한 성분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가공, 탈피, 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된 것
- (수산물) 단순처리일 경우 :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임 등,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지 않은 정도의 자숙한 제품등

### □ (위해발생우려(섭취방법) 여부에 의한 분류)

- (가공식품) : 냉동 해동 제조 가공 냉동 등 여러 공정을 거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동 후 제조공정을 거쳐 가공한 후 재냉동한 제품은 가공식품
- (수산물) 회, 횡감용 필렛 등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하는 식품은 식품공전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최종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하는 수산물의 규격 적용

## 구비서류

- 한글표시사항
- 수출국 위생증명서(약정국가, 수산부산물)
  - \* 약정국가(6개국) :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에콰도르
  - \*\* 수산부산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총칙 59), 60)의 냉동식용어류머리 및 냉동식용어류내장
- 생산지증명서 및 방사능검사성적서(일본산)
  - (수입금지)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은 수입금지('13.9.9.)
    - \*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지바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아오모리현
  - (생산지증명서 및 방사능검사증명서) 8개 도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생산지증명서에 추가로 방사능검사증명서 첨부
    - \* 가나가와현, 도쿄도, 홋카이도, 에히메현, 구마모토현, 미에현, 가고시마현, 아이치현
  - (생산지증명서) 8개 도현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생산지증명서 첨부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검량기관에서 발급한 검량서(중량확인이 곤란한 활수산물)
- 수출계획서, 쌍방계약서, 이행각서 등(외화획득용)
  - \* 쌍방계약서와 이행각서는 기름치, 대구내장 등 식용이 금지된 수산물에만 징구
-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및 품목제조보고서(자사제조용)
- 검사명령대상 수산물은 시험·검사 성적서
-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되거나 담당자 검토가 필요한 서류 등
  - 다량어류의 경우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어획증명서 등

## 구비서류

-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 수출위생증명서
- 수출계획서(「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유기농 인증서
  - (국내법에 따른 인증제품) 인증기관 발급 인증서 사본과 거래증명서(T/C)
  - (동등성협정을 체결한 국가 유기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 해당 국가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과 수입증명서 원본
- 할랄인증 축산물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축산물의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 다만, 수출위생증명서에 그 인증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수출 위생증명서 제출로 같음



## 수입 신고시 유의사항

- (수입허용 국가 및 품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3항 및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에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 축산물인지 확인
- (해외작업장 등록) 해당 축산물가공장이 식약처에 해외작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해외작업장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해외작업장의 설치 운영자가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식약처에 해외작업장 등록을 요청하여야 함
  - \* 상기 법규는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 시행규칙/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 가능
- (수출 위생증명서) 수출국 정부가 식약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참고로, 국가별 수입허용 축산물의 목록 및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수입식품 > 수입허용축산물 /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현황)에도 공개하고 있음
  - \* 축산물가공품 중 협의된 서식이 없을 경우, 멸·살균 등의 위생조건 준수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열처리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는 수입신고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부여받은 이력번호를 표기하여 신고
  - 적용대상 품목 : 수입쇠고기(부산물 포함)
  - \* 수입돼지고기는 2018년 12월 28일부터 이력관리제도 시행



## 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안내서

Chapter

# 03

## 기타 관련 서류



# 01

## 국외검사기관 성적서/유기농 관련 서류

### 국외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국외검사기관에서 검사 후 수입 신고 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정밀검사 전부 또는 일부 인정**
  - ☞ 국외검사기관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정책정보 → 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기관 관련 규정 및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에서 확인 가능
  - ※ 해당 국외검사기관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검사대상 확인 및 서명권자 일치여부 확인

### 유기농 관련 서류

- 대상 : 국내법 따라 인증된 유기식품 또는 동등성협정 체결 국가 유기규정에 따라 해당국 제조, 인증 받은 유기 가공식품
- 제출서류 : 1) 국내법에 따른 인증 제품 → 유기식품 인증서 사본 + 거래증명서 원본  
 2) 동등성 인정 제품 → 유기 가공식품 인증서 사본 + 수입증명서 원본  
 ※ 동등성 인정 : 현재 미국('14.7.1.부터 발효), 유럽연합('15.2.1.부터 발효)과 체결, 유기 가공식품(유기 농, 축, 수산물과 수산물 유기 가공식품은 제외)만 인정
- 유기농인증서 포함내용
  - 유기표시 : '표시도형' 또는 '표시문자' 중 선택 표시 가능(모두 표시하는 것도 가능)
  - 의무 표시사항 : 인증사업자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가공식품은 제조 회사) 주소, 인증번호 및 인증기관명, 생산지
  -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가능성 있음' 표시는 유기식품 불가

### 작성 예시

인증품의 표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 : **작육반(김**)</li> <li>□ 품목 : 유기재배 딸기</li> <li>□ 생산지 : 고양시</li> <li>□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01</li> <li>□ 전화번호 : ****-*****</li> </ul>
인증기관명 : 000	
인증번호 : 0-0-0	

인증품의 표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 : **수산(김**)</li> <li>□ 품목 : 유기 다시마</li> <li>□ 생산지 : 고양시</li> <li>□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01</li> <li>□ 전화번호 : ****-*****</li> </ul>
인증기관명 : 0000	
인증번호 : 0-0-0-0	

- ※ 수입 유기식품 신고 시행 : 2014.10.1.부터 (단, 10.1.이후 선적 유기식품부터 적용)
- \* 수산물 : 해양수산부 소관 시행규칙 개정일(2014.10.15.)부터

02

유전자변형식품(GMO) 관련 서류

GMO 표시 신고 식품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 및 알팔파 및 이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외화획득용 및 연구조사용은 제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

구분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농산물	<p>식약처가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한 모든 유전자변형 농산물(대두, 옥수수, 캐놀라(유채), 면화, 사탕무, 알팔파)</p> <p>* LMO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승인 대상으로 수입승인서를 받아 수입신고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표시면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분유통증명서</li> <li>- 정부증명서</li> <li>- 시험·검사성적서 제출</li> </ul> </li> <li>※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 관련</li> </ul>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	<p>GMO 표시대상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표시면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분유통증명서</li> <li>- 정부증명서</li> <li>- 시험·검사성적서 제출</li> </ul> </li> <li>※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 관련</li> <li>• 유전자변형표시 대상 제외: 간장, 식용유, 당류(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변성전분, 주류(맥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일반증류주, 기타 주류 등)</li> <li>• 가공식품등에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의 용도로 사용한 원재료의 경우, 제조회사의 용도증명서를 제출하면 표시대상에서 제외</li> </ul>

구 분	내 용																											
표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주표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자변형식품(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유전자변형 OO포함식품(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li> </ul> </li> <li>• 원재료명 바로 옆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된 O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자변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바로 옆에 '유전자변형 OO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li> </ul> </li> </ul> </li> </ul>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는 한글로 하며, 외국어 병행시 한글 표시와 같거나 작은 크기로 함</li> <li>• 표시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등 사용 또는 스티커나 라벨등을 사용함</li> <li>• 바탕색과 구별되게 12포인트 이상으로 선명하게 함</li> <li>• 두부나 목 또는 즉석판매제조업소와 같이 용기나 포장 없이 판매하는 경우, 진열상자 또는 별도 게시판 이용하여 표시</li> </ul>																											
행정처분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내용</th> <th colspan="3">식품위생법 (품목제조정지)</th> <th colspan="3">수입식품특별법 (영업정지)</th> </tr> <tr> <th>1차</th> <th>2차</th> <th>3차</th> <th>1차</th> <th>2차</th> <th>3차</th> </tr> </thead> <tbody> <tr> <td>유전자변형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td> <td>15일</td> <td>1월</td> <td>2월</td> <td>5일</td> <td>10일</td> <td>20일</td> </tr> <tr> <td>유전자변형식품을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닌 것으로 표시·광고한 경우</td> <td>1월</td> <td>2월</td> <td>3월</td> <td>10일</td> <td>20일</td> <td>1월</td> </tr> </tbody> </table> <p>※ 수입신고 시 GMO 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검사결과 GMO 검출 시 수입단계에서는 표시 보완토록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li> </ul>	내용	식품위생법 (품목제조정지)			수입식품특별법 (영업정지)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유전자변형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5일	1월	2월	5일	10일	20일	유전자변형식품을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닌 것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1월	2월	3월	10일	20일	1월
내용	식품위생법 (품목제조정지)			수입식품특별법 (영업정지)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유전자변형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5일	1월	2월	5일	10일	20일																						
유전자변형식품을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닌 것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1월	2월	3월	10일	20일	1월																						

표시 면제 증명서류	관련 증명내용
구분유통증명서	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 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정부증명서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 또는 수출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	<p>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p> <p>*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만 해당</p>

03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서류

BSE 대상 제품

-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 소에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병으로서 일명 광우병이라고 불림
-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우유, 유가공품 제외)

BSE 품목 수입금지국(36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노르웨이,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체코, 일본, 캐나다, 이스라엘, 미국, 브라질

대상국가	대상식품	증명서 종류
모든국가 (BSE 관련 36개국 제외)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BSE발생국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비발생국가의 BSE에 감염되지 아니한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수출국 정부증명서(관련단체, 협회등 공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자가서류에 공적기관이 공증한 증명서 포함)
BSE관련 36개국	콜라겐케이싱	반추동물의 원피(HIDE, SKINS)를 원료로 한 콜라겐케이싱은 BSE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원피)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원본)
BSE관련 36개국	우지가공품	원료로 사용한 우지가 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0.15% 이하임을 증명하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 제출
	젤라틴 및 콜라겐	원피 및 가죽에서 유래되었다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제조시설
	제2인산칼슘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 제출(단, 소석회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

- 수출국정부증명서<sup>1)</sup> 기재 내용(BSE 관련 36개국 원료)

- 해당 제품의 원료는 가축전염병 우려가 없는 건강한 가축에서 유래하였고 동 원료는 원피 및 가죽에서만 유래하였음
-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피 및 가죽은 한국의 관련규정에 따른 특정위험 물질(SRMs)과 교차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되었음
- **(콜라겐 제조공정)** 콜라겐의 제조원료는 세척(washing), 산 또는 알칼리를 사용한 pH 조정(adjustment)과 뒤이어 1회 이상 헹구기(rinses), 여과(filtration) 및 압출(extrusion)이 포함된 처리를 받았거나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가공 방법으로 처리되었음
- **(젤라틴 제조공정)** 젤라틴의 제조원료는 산 또는 알칼리 처리에 뒤이어 1회 이상 헹구기(rinses)를 거쳤으며, pH는 그 후에 조정되어야 함. 젤라틴은 1회 이상이 연이은 가열과 뒤이어 여과 및 열처리 방법에 의한 정제(purification)에 의해 추출(extracted)되었음

- 수출국정부증명서<sup>2)</sup> 기재 내용(BSE 36개국 이외 국가)

- 해당 제품의 원료는 가축전염병 우려가 없는 건강한 가축의 원피 및 가죽에서만 유래하였음

- 사례별 제출 서류 및 확인사항

수입사례	원료 생산국	최종제품 수출국	제출 및 확인 서류
• 호주산 콜라겐 또는 젤라틴을 사용한 독일 초콜릿바	36개 이외 국가	BSE 관련 36개국	수출국정부증명서 <sup>2)</sup>
• 오스트리아 젤라틴을 사용한 독일 초콜릿바	BSE 관련 36개국	BSE 관련 36개국	수출국정부증명서 <sup>1)</sup> 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제조시설 생산제품
• 아르헨티나산 젤라틴 사용한 미국산 사탕(팝타르츠)류	36개 이외 국가	BSE 관련 36개국	수출국정부증명서 <sup>2)</sup>
• 한국산 젤라틴 원료(또는 빈캡슐)를 사용한 호주에서 수출한 캡슐제품	36개 이외 국가	BSE 관련 36개국	수출국정부증명서 <sup>2)</sup>



04

## 주문자부착상품(OEM) 관련 서류

### 주문자부착상품(OEM)

- 국내 식품 영업자가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에 계약의 방식으로 식품 생산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하는 식품등
- 상표란 특허청에 상표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를 의미하며,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표도 사용 가능  
※ 상표검색 사이트 <http://www.kipris.or.kr/>
- 제외대상 : 농·임산물 및 주류, 국내식품업체가 외국 현지에 설립한 자사설립한 자사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제출서류	영업자 준수사항	한글 표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기한설정사유서 ※ 근거: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위생평가 실시</li> <li>• 자가품질검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표시면 제품명 주위에 제품명 활자크기 1/2 이상의 한글로 다음 중 하나로 표시</li> <li>- 원산지 ○○(위탁생산제품), ○○산(위탁생산제품)</li> <li>- 원산지 ○○(위탁생산), ○○산(위탁생산)</li> <li>- 원산지 ○○(OEM), ○○산(OEM)</li> </ul>

### 주문자부착상표(OEM) 관련 문의부서

- OEM 대상여부 및 자가품질검사, 표시사항 관련 : 수입식품정책과, 식품안전표시인증과
- 유통기한설정사유서 및 유통기한설정실험 관련 : 식품기준과
-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의 위생점검 : 현지실사과



## 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안내서

Chapter

# 04

## 영업자 준수사항별 행정처분 기준



## 01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준수사항

주요 영업자 준수사항	처분규정		
	1차	2차	3차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영업등록 취소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검사기관에 수입식품등의 신고업무와 관련된 검사를 의뢰할 때 검사수수료 외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영업등록 취소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등에게 다른 영업자의 수입신고서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영업정지 2개월	영업등록 취소	
유통기한 경과된 수입식품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됨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축산물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판매하여서는 아니 됨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이유식등을 신문·잡지·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조제분유와 같은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수입신고확인증, 신고필증을 그 발급일로부터 2년간 보관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자신이 유통·판매하는 수입식품등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은 수시로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여야 하는 수입식품등은 보관온도를 유지하여야 함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수입식품등에 대한 공중위생상 위해정보를 입수하였거나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위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포장·용기가 파손된 수입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진열하여서는 아니 됨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 상기 규정은 법령 개정 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행법 확인 필요

02

##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자 및 인터넷 구매대행업자 준수사항

주요 영업자 준수사항	처분규정		
	1차	2차	3차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영업등록 취소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검사기관에 수입식품등의 신고업무와 관련된 검사를 의뢰할 때 검사수수료 외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영업등록 취소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등에게 다른 영업자의 수입 신고서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영업정지 2개월	영업등록 취소	
조제유류에 관해 다음과 같은 광고 및 판매촉진 행위 금지 ①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 그밖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② 조제유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 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의 표시 ③ 모유와 같은, 모유처럼 또는 이와 유사한 글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조제유류의 사용이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오도 또는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 ④ 조제유류를 의료기관 모자보건시설 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 ⑤ 홍보단, 시음단, 평가단 등 모집을 통해 사용후기 등을 작성,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소비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용후기 등을 판매사 홈페이지 등에 연결하거나 직접 게시하는 행위 ⑥ 그 밖에 조제유류의 판매 증가를 목적으로 한 광고나 판매촉진 행위로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행위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 상기 규정은 법령 개정 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행법 확인 필요

## 03

## 수입식품등 보관업자 준수사항

주요 영업자 준수사항	처분규정		
	1차	2차	3차
보관온도가 정하여진 수입식품등은 보관온도에 맞게 보관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등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물품과 구별 되도록 보관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수입식품등의 제품명 수입자, 수입일, 수량, 중량, 선하증권번호, 반입일, 반출일을 기록하고 이를 수입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200만원	과태료 300만원
수입식품등의 확인 및 구별이 가능하도록 정보의 표시를 수입식품등에 부착하여야 하며 보관기간 동안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과태료 30만원	과태료 60만원	과태료 90만원
수입식품등은 공산품과 별도의 공간에 분리하거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함. 다만, 분리 또는 구획보관이 어려울 경우 랩으로 감싸거나 별도 포장하여 다른 공산품 및 분진 등과 교차오염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물질, 위험물등과 반드시 분리하여 보관	과태료 30만원	과태료 60만원	과태료 90만원
바닥, 벽면, 천장과 적절한 거리를 두어 보관	과태료 30만원	과태료 60만원	과태료 90만원

\* 상기 규정은 법령 개정 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행법 확인 필요

Chapter

# 05

## 수입식품법 및 허위과대광고 Q&A

\*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 01

## 수입식품법 관련 Q&amp;A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식품법 준수사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제2항에 따르면, 주문자상표 부착수입식품등이란 영업자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2)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3)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은 수입신고 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 식품영업자가 중국에 식품제조공장을 설립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 수입하는 경우 OEM에 해당되는지

- 수입·판매업체가 외국 현지에 설립한 자사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이는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원료를 기타 가공품에 사용 가능한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이 자사제품 제조용이 아닌 판매용으로 수입된 것이라면, 별도의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아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농산물 및 가공식품이 잔류농약검사로 인하여 통관단계에서 부적합 될 경우 행정제재는 어떻게 되는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신고인은 ①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의 용도 전환, ③ 폐기 중 어느 하나의 해당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행정제재는 없습니다.
- 다만, 수입검사 또는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수입되는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에 대해서는 5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입업체가 정상적으로 수입한 제품을 구매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려는 경우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로부터 수입식품을 구매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자유업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될 경우 영업자 지위승계를 해야 하는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6조(영업의 승계)에 따라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존 영업자(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 영업자로 보여 이는 새롭게 영업등록을 하거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A사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제품을 B사의 타 업체에 제조·가공을 위탁하여 생산이 가능한지

- A업체에서 자사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제품을 B사에서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제품을 구매하여 식품의 원료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해외직구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자가소비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구매한 제품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영업등록 후 정식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수출국 제조업체의 위생점검 주기와 실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문의

-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고시 제2017-81호)제9조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등의 종류에 따라 점검 주기별로 1회 이상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지 위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6]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홍보차원에서 구매대행 행위로서 분유를 인터넷상으로 무료가 아닌 20원에 판매를 해도 되는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8] 영업자 준수사항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마.4)에 따라 조제유류의 구매 촉진을 목적으로 무료 또는 저가로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에 관하여 광고 또는 판매·구매촉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는 위 규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에 따라 20원의 금액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저가로서 판매·구매촉진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령 위반입니다.



해독주스 또는 디톡스 주스 표현 가능 여부

소비자가 검색포털에서 디톡스, 해독주스를 검색할 시 당사제품이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나요?

- 소비자가 검색할 때 검색이 되도록 하거나, 검색포털 광고 시 디톡스, 해독주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생리통완화 표현 가능 여부

산누유즙을 판매하면서 생리통 완화, 부인병, 누독냉증 완화 등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나요?

-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해 “생리통 완화,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 부인병, 수족냉증 완화” 등의 표현을 하시는 것은 소비자로부터 하여금 해당 제품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당뇨개선 당뇨환자를 위한 등 표현 가능 여부

기타가공품을 판매하면서 ‘당뇨 개선 및 예방에 도움’, ‘당뇨환자를 위한 답곡’, ‘당도절이 가능한 답곡’, ‘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답곡’ 등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이 아닌 일반가공식품(기타가공품)에 ‘당뇨개선 또는 예방에 도움된다, 당뇨환자, 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특수의료용도식품(당뇨환자용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블로그, 카페, SNS 상 식품 리뷰를 식품판매사이트에 링크 가능한지 여부

블로그나 카페, SNS에 해당 상품에 대해 쓴 리뷰(맛이 좋다, 배송이 빠르다 등)를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링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소비자가 해당상품에 대해 기재한 리뷰 내용에 질병이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허위·과대광고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에 해당하여 적절하지 않으나, 소비자의 리뷰 내용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등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고 단순히 맛이 좋다, 배송이 빠르다 등의 후기내용인 경우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링크하여 광고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객이 작성한 후기 허위·과대광고 범위 해당 여부

고객후기게시판을 운영하는 경우 자체가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에 해당 하나요?

- 고객 후기 내용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에 해당되므로, 영업자 또는 쇼핑몰운영자는 고객 후기게시판을 운영함에 있어 후기 내용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특허내용 광고 가능 여부

일반식품에 특허 받은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식품광고 시 해당 제품에 대한 특허 출원이 아닌 등록 사실을 광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특허 내용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특허를 광고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숙취해소 등의 표현 가능 여부

당사에서 판매하는 환에 대하여 '숙취해소', '간에 좋다' 등의 표현이 가능한가요?

- 일반식품에 대한 광고 시 '숙취해소에 좋다'라는 표현을 하거나, 음주전후 먹었을 때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실제 숙취해소의 효과가 있어야 하며, 제조자의 책임 하에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식품에 대한 광고 시 '간에 좋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에 해당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 차가버섯 추출분말 판매 시 '환우들이 많이 찾는',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표현 가능 여부

타가버섯 추출분말 100%를 판매하며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타가버섯',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타가버섯', '환우들이 많이 찾는 타가버섯', '환우들에게 많이 알려진 타가버섯'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 차가버섯분말을 광고함에 있어 '면역력', '환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환우'란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환자'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함



### 농산물 판매 시 '춘곤증을 이기는 음식'으로 표현하여 판매가능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봄 춘곤증을 이기는 음식'으로 표현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봄 춘곤증을 이기는 음식'으로 광고하시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흰강낭콩 함유 두유 광고 시 흰강낭콩 기사를 삽입하여 광고 가능 여부

흰강낭콩이 함유된 두유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상세페이지에 흰강낭콩 등의 파세올라민이 테동강도에 효과가 있다는 기사를 이미지화 해서 삽입할 수 있나요?

- 두유(가공식품)을 광고함에 있어 기사를 발췌하여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두유의 원료인 흰강낭콩 및 파세올라민에 대하여 체중감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는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되어 광고에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발효마늘에 대해 '피로회복', '남성의 자신감 회복' 등으로 광고 가능 여부

발효황금마늘에 대하여 남성의 자신감회복, 체력증강 및 피로회복, 위액 분비 촉진, 살균 및 항균작용 등으로 광고가 가능한가요?

- 일반가공식품 광고 시 남자의 자존심 회복에 도움, 피로회복에 도움,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정장 및 소화작용 촉진, 살균 및 항균작용, 항산화 작용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 고객후기 중 질병명을 \*\*등으로 가린 후 광고 가능 여부

아래의 예시와 같이 질병명을 가린 고객의 후기를 광고에 활용하여도 되나요?

- (예시) \* 제품을 먹었더니 고\*\*에 확실히 좋은 건 같네요(고혈압, 고지혈 등을 고\*\*으로 표시)  
 \* 제품을 먹었더니 분\*\*에 좋은 건 같아요(분기를 분\*\*라고 표시)  
 \* 제품을 먹었더니 다\*\*트에 좋은 건 같아요(다이어트를 다\*\*트 라고 표시)  
 \* 제품을 먹었더니 콜\*\*\*롤에 수치 강도에 좋네요 (콜레스테롤을 콜\*\*\*롤 라고 표시)

- '고\*\*', '분\*\*', '다\*\*트', '콜\*\*\*롤 수치 감소' 등 특정 질병 명칭 또는 특정 효과 명칭을 일부 가린다하더라도 당해 광고문구 및 전반적인 광고 정황으로 소비자가 '분기', '다이어트',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등으로 유추할 수 있는 점이 있으므로 예시와 같이 특정 질병 명칭 및 특정 효과 명칭을 기재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 가공식품의 원재료 중의 특정 성분 함유 사실 광고 가능 여부

썩진액 제품을 판매하며 원재료인 썩에는 ‘자세오시딘’과 ‘유파틸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광고할 수 있나요?

- 썩진액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인 썩에 자세오시딘과 유파틸린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내용이 논문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인 경우라면 광고할 수 있습니다.



### 말린비트 광고 가능 여부

말린 비트를 판매하며 “건강한 혈관을 위해 비트를 먹어보아요!”, 혈관청소부 비트, 풍부한 비타민, 칼슘, 철분, 미네랄, 식이섬유로 가득한 레드비트로 표현할 수 있나요?

- 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식품 및 그 원재료 또는 성분에 대하여 ‘건강한 혈관, 혈관청소부’의 표현을 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식품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함유 등의 표현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 상장 인용 광고 가능 여부

홍요핑으로 식품 광고 시 전국 명과 대품평회 최우수 명예상 베이커리브랜드(일본왕닐두퇴)를 인용하여 광고가 가능한가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이외에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인용하거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것은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해 상장은 「정부표창규정」, 「정부조직법」 등에서 규정하는 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용한 광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생식함유제품 광고 시 체험기 광고 가능 여부

생식함유제품 광고 시 고객 후기(우유에 타 먹으면 맛있다, 파우치로 되어 있어 간편하다, 파우치 디자인이 예쁘다 등)를 인용하여 광고 가능한가요?

- 제품의 섭취편의성, 맛, 디자인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의 고객 후기를 발췌하여 홈쇼핑에 광고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상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과일퓨레에 '이유식' 표현 가능 여부

영유아식품이 아닌 과일퓨레를 이유식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 과채가공품 등 일반 가공식품에 대하여 '이유식, 아기간식'의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용도식품(기타 영유아식 등)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습니다.



### 조제분유에 성장발육, 두뇌발달, 소화촉진 표현 가능여부

조제유류에 성장발육, 두뇌발달,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안전한 분유, 독일 엄마들이 선호하는 프리미엄 분유 표현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및 인터넷 구매대행 업자는 조제유류에 대해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성장발육과 두뇌발달에 관한 표현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제분유에 모유와 가장 닮은 분유, 모유와 가장 가까운 분유

조제유류에 모유와 가장 닮은 분유, 모유와 가장 가까운 분유 표현을 사용할 수 있나요?

- 모유와 가장 닮은 분유, 모유와 가장 가까운 분유등의 문구는 소비자가 조제유류의 사용이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오도 또는 오인할 수 있어 적절치 않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천연'표시가 가능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호제11호에 따라 '천연'의 표시는 합성향·착색료·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표시가 가능합니다.
- 또한, 최근('16.7.7.) 우리 처에서 게시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천연' 표시 관련 지침에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의 정의와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도 동 지침에 명시된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의 정의와 범위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 세척, 박피, 압착, 분쇄, 교반, 건조(60℃ 이상 제외), 냉동, 냉장, 성형, 압출, 여과, 원심분리, 혼합, 폭기, 숙성, 자연발효, 용해



### 건강기능식품에 혼합제제를 사용한 경우 표시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9조(준용)에 따라, 이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알레르기', '방사선조사', '포장재질'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간략명 및 주용도'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합니다.

- 따라서, '식품첨가물 혼합제제'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혼합제제류의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혼합제제류를 구성하는 식품첨가물 등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프로폴리스추출물 건강기능식품에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및 면역력 증가 표시 가능 여부

-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의 주원료(기능성 원료)가 프로폴리스추출물 한가지일 경우 기능성 내용은 '항산화 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구강에서의 항균 작용은 구강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에 한함)이며, 면역력 증가는 기능성을 벗어나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로 위의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표시할 수 없습니다.



수입식품에 소비기한 광고 가능 여부

수입식품에 소비기한을 표시하여 광고할 수 있나요?

- 현행 식품위생법 상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은 표시 광고가 불가하며, 제조사의 책임 하에 적법하게 설정된 유통기한을 표시 광고하여야 합니다.



[위반 구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위반 내용 :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 광고 매체 : 인터넷



성장기 청소년들의 키성장을 촉진시켜 무럭무럭 자란다.

녹용의 효능

**성장판 자극 및 근골을 강화해 성장에 최고**

녹용은 성장판 연골세포의 성장을 촉진해 성장기 아이가 잘 자라도록 돕습니다. 간과 신장의 기운을 도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힘이 솟아나도록 합니다.

양질의 혈액을 풍부하게 만들어 빈혈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녹용은 식욕을 돋게 하고 밤을 잘 먹도록 해 몸이 마르고 허약한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또래보다 작은 아이, 비적 마른 아이, 피로를 잘 느끼는 아이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폐를 보호하고 면역력 높여 아이를 튼튼하게**

녹용은 여러 병원 미생물에 대한 항균작용을 하고 조절기능 강화 및 피로 회복 작용을 합니다. 오장육부의 활발한 활동을 돕고 몸의 면역력을 높여 주며 최근에는 호르몬 이상에도 좋은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녹용은 폐를 보호하고 기관지 면역력을 증진시켜 감기나 비염 등 호흡기 질환예방에 좋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경우에도 복용하면 가래를 없애고 기침을 가라 앉히는데 효과적입니다. 단체생활을 시작해 전염성 질환에 자주 걸리거나 만성 비염과 천식에 시달리는 청소년에게 좋습니다.

- 과대광고 문구 : 키크는약, 성장판 자극 및 근골을 강화해 성장에 최고...등



**[위반 구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위반 내용 : 마누카꿀이 내과질환, 아토피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 광고 매체 : 인터넷

청정 뉴질랜드의 마누카꿀은 UMF와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살균 효과가 매우 커서 상처를 치료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 귀한 꿀입니다.  
내과 질환 및 위장 소화불량에도 효과적입니다.

- ✓ **천연 항산화 물질**      박테리아와 관련 질병에 도움
- ✓ **속쓰림 해소**            속쓰림과 위산장애 감소
- ✓ **피부미용**                여드름, 아토피치료에 효과적

**02 상품 주요정보**

식품유형	UMF5+ 마누카허니
제품용량	1KG
주요성분	마누카꿀 100%
원산지/제조사	뉴질랜드/콤비타
주의사항	-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 꿀 제품에 알러지가 있는분은 주의하세요.
섭취방법	- 일반적 섭취방법 - 하루3번 식사전 5g(한티스푼)을 요거르트, 커피에 타 드시거나 치즈에 발라먹는등 편한 방법으로 섭취하세요. - 감기가 걸렸을때, 코가막혔을때 생강차 혹은 따뜻한 우유에 타서 마시면 코막힘과 감기치료에 효과적입니다.



- 과대광고 문구 : 청정 뉴질랜드의 마누카꿀을 UMF와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살균 효과가 매우 커서 상처를 치료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 귀한 꿀입니다. 내과 질환 및 위장 소화불량에도 효과적입니다. 등



### [위반 구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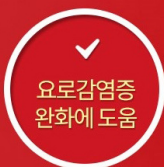
- 위반 내용 :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 광고 매체 : 인터넷



요로에 유해균 흡착억제, 요로 감염증, 방광염 증세 완화 및 발병 예방, 비뇨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방광 및 요로의 **Cranberry 50,000** 건강관리에 도움되는 크랜베리!

친환경적 특수공법으로 **고농축 유효성분**을 추출하여 캡슐 1정당 엄선된 크랜베리 35개 이상 함유된 제품을 하루 1캡슐로 간편하게 섭취하세요.



- 과대광고 문구 : 요로 감염증, 방광염 증세 완화 및 발병 예방, 비뇨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등



[위반 구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위반 내용 :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 광고 매체 : 인터넷



**Curcumin Active + Boswellia**

생물학적으로 이용 가능한 커큐민(curcumin) 및 보스웰리아(boswellia ; 식물을 기반으로 하는 항염증제)인 LongVid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커큐민**

류마티스 관절염 개선, 항암효과, 알츠하이머(노인성 치매 예방), 항염효과, 담석증 예방, 눈 질환 예방, 백반증 개선 등에 도움이 됩니다.

- 과대광고 문구 : 류마티스 관절염 개선, 항암효과, 알츠하이머(노인성 치매 예방), 항염효과, 담석증 예방, 눈 질환 예방, 백반증 개선 등에 도움이 됩니다. 등



[위반 구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위반 내용 :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 광고 매체 : 인터넷

▶ 생활습관 등으로 인한 비만증에 효과

▶ 고혈압감소 및 지방분해로 변비에 효과

▶ 복부비만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추천

- 과대광고 문구 : 생활습관 등으로 인한 비만증에 효과, 고혈압감소 및 지방분해로 변비에 효과, 복부비만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추천 등






**[위반 구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위반 내용 :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 광고 매체 : 인터넷

혈관청소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에 도움을 주는  
건강식품 폴리코사놀

## Policosanol Krill Oil

폴리코사놀 크릴 오일 60캡슐



**상용명/ 제조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약품</li> <li>• 제조업소</li> <li>• 소재지</li> <li>• 제조업종별</li> <li>• 유통기한 또는 유효기간</li> <li>• 포장단위별 표시사항</li> <li>• 포장단위별 수량</li> <li>• 판매방법 및 단량</li> <li>• 원산지</li> <li>• 기능성명</li> <li>• 성분명, 성분비율, 순화시 주의사항 및 함유량 표시사항</li> <li>• 용량의 배양 및 제조를 위한 절차</li> <li>• 유사표지 사용여부</li> <li>• 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사항</li> <li>• 표시용고 사용여부</li> <li>•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식품</li> <li>크릴오일</li> <li>호주</li> <li>우당업종(기타) 2개월이상</li> <li>2022년 11월</li> <li>총포자수 13345</li> <li>1025용</li> <li>폴리코사놀 크릴오일</li> <li>폴리코사놀 크릴오일 60캡슐</li> <li>혈관청소, 혈관관리</li> <li>아우터링의 복용</li> <li>건강식품</li> <li>건강식품을 유통하기 위한 절차</li> <li>유사표지 사용여부</li> <li>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하는 경우</li> <li>표지사항</li> <li>표지사항</li> <li>표지사항</li> </ul>
---	--

소비자 상담 전화 : 0501-1006-8888

여러연구를 통해 90년 초반 **쿠바정부**에서는 노인대상을 **폴리코사놀**을 무료로 나눠 준 후 콜레스테롤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든것을 뿐 아니라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꾸준한 운동과 폴리코사놀 복용으로 혈관으로 오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과대광고 문구 : 혈관청소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에 도움을 주는,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등



[위반 구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 위반 내용 : 의약품에만 사용하는 단어를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 광고 매체 : 인터넷

- 신개념 테스토스테론 보충제
- 7일만에 프리 테스토스테론을 증가\*
- 총 테스토스테론을 증가†
- 실라지트 100mg
- 콩소 구연산염 300mg
- 마카 추출물 50mg
- 프리테라스트 250mg
- 건강 보조 식품
- 주요 성분 테스트 결과표 바탕으로 한 결과

당신이 상상 할때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다면, 마약!

- 성적 흥분을 유지가
- 질려 무용가
- 주 침로 표기 성분 함유
- 과장 또는 표기
- 미 평가 성분 함유
- 해외 수입

**성공 고객 사실**

최초 제공량 : 1개월  
전테이비 당 분사 횟수 : 90

	서빙 당 금액	행일 가치 %
마약 (올복 혼합 마약)	75 mg	50 %
실라지트	40 mg	5 %
테스토스테론 촉진 매트릭스		
프리 테스 추출물 (Tribulus terrestris) (2일) 45 % 사포닌 평균	500 mg	-
Shilajit 추출물 (PrimalVie) 50 % 알복 산 평균	400 mg	-
콩소 구연산 5 % 콩소 공급	300 mg	-
브로마의 마유 (Broussonetia oleracea) 디 마를 돌 의한 공급	50 mg	-
마카를 추출물 (Lepidium alba) (뿌리)	50 mg	-
넛밤 콩 추출물 (Macuna pruriens와 같이) (종자)	50 mg	-

\* 일일 금액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과대·과장된 표시·내용**

**마이크로 테스토스테론 부스터**  
Test HD의 주요성분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상당히 증가시킵니다. Test HD는 순환의 회복을 요구하지 않으며 실라지트와 콩소 같은 성분들의 과학 연구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Test HD는 0 가짜기를 프리테라스트, 넛밤 콩과 마연을 등의 다른 잘 알려진 성분들 포함합니다.

- 7일 내에 프리 테스토스테론을 증가

† Test HD는 단 7일 만에 프리 테스토스테론의 증가와 에스트라디올의 감소를 위한 임상실험연구에 나타난 것처럼 총성의 집중적이고 강력한 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프리 테스토스테론은 테스토스테론의 가장 활성 형태 형태로 근육 형성 과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 총 테스토스테론을 증가

Test HD는 실라지트와 마카와 다른 높은 산력에서 발견된 다른 형태의 알코올로 부터 추출된 최극 유기광물복합체의 임상 강화를 가진 것부터 마카로 테스토스테론 부스터입니다. 이 강력한 테스토 부스터 복합체는 가짜된 것처럼 90일 후에 포함 제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상당히 증가시킨다는 임상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같은 실라지트 성분은 단 15일 내에 ATP 활동 수지와 활력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구, 기록되었습니다. ATP는 CNS 각성제의 함께 발생하는 인지된 에너지와 달리 몸에 사용된 세포 에 나지 않습니다.

- PCT가 필요없습니다.

이 강력한 제트법은 신체가 정상적인 건강 범위에서 있는 동안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자연스럽게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주세요.

마이크로 테스토스테론과 다른 경쟁사 제품과 달리, 완전하게 공개된 의학적 복용량 안에 우수한 핵심 성분들 포함되어있어 당신이 어떤 것에 지불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품 사용법**  
제용량: 1일 3번 복용 복용하세요. 아침에 한 정, 정오에 한 정을 드세요. 운동하는 날에는 운동하기 30전에 2정을 드세요. 24시간 안에 2정을 드세요. 섭취하지 마세요. 사용 할 약들을 전부 고려하여 일으키고 잠재된 방법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포함된 다른 성분들**  
마세 갈성 산 성분들로서 인산염 2 수화물, 스테아르산, 크로스 카르멜로스, 나트륨, 크렐링제 (하이 프로 밀로 오스, 이산화 티타늄, 황색 크 스토포스, 알코, 말로 트리트, 중쇄 트리글리콜 세라이드, 하이드로 카시 프로필, 셀룰로오스, 이산화 규소,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아 세셀 팔 알콜, 이 재용에는 크로브이 들어 있습니다. 물을 제외한 사들에서 처리됩니다.

**주의사항**  
기 테스토스테론이나 성 기능 장애를 위해 사용하지 마세요.  
18세 이하는 복용하지 마세요. 임신, 수유 중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에게 상담하세요. 만약 당뇨병이나 혈당 조절된 부분 전문의사와 상 담하세요. 만약 치료 중이거나 질병 진단을 받았거나 혹은 특정 질병에 대한 가족력이 있거나 병에 대한 처방 또는 혈액 화학검을 포함하는 일반 의약품들 사용중이라면 사용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마이프로 또는 운동 프로그램들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추천된 사용량 또는 복용해서는 안됩니다. 이 제품의 오남용은 결과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큰 공허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시대로 사용하세요. 포장에 포함된 경우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늘하고 건조한 곳(15~20°C)에 보관하십시오.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면책사실**  
이해는 고객님이 수정 제용과 100% 동일한 사들에서 반정하기 위해 노력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용 제조사가 포장 혹은 성분들 인적이트리는 경우 사이트의 정보 아닌 제품 포장에 기입된 내용을 기준: 트 사용하지할 권장됩니다.  
제조사 웹사이트 방문하기

- 과대광고 문구 : ~강력한 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상당히 증가시켜준다는 임상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공개된 의학적 복용량 안에 우수한~. 등



**[위반 구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위반 내용 :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 광고 매체 : 인터넷



[Solgar] Vegetarian CoQ-10 200mg (949) 솔가 코큐텐 200mg 60정

**항산화 심장건강**

**제품설명**

코엔자임Q10은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함량당 200mg 의 코엔자임Q-10 이 함유 되어 있습니다

- 과대광고 문구 : 항산화 심장건강,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반 구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위반 내용 :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 광고 매체 : 인터넷

편도선염과 목감기 예방을 위한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영양제 아싸이 추출물 Natrol AcaiBerry 이랍니다.



- 과대광고 문구 : 편도선염과 목감기 예방을 위한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영양제

# 부록

## 과대광고 법령 및 수입검사 부서



## 01

# 허위과대광고 관련 법령

## 1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표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표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표장의 범위)** ①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37조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등록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3.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

- 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6.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
  7. 외국어의 사용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나 “주문 섀도” 등 제품의 방법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9.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10.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12.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
  13.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 ② 제1항제2호·제5호·제6호·제12호 및 제1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제8호 가목·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조리·제공하는 식품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에서 제조·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2. 영 제25조 제2항 제6호 본문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 2의2. 영 제26조의2 제2항 제6호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산 농·임·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메주·된장·고추장·간장·김치에 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표시·광고
  4. 그 밖에 별표 3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표시·광고
- ③ 법 제13조에 따른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3]**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제8조제2항제4호 관련)**

**1. 유용성**

- 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1)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 2)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 나.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1)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 2)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 3)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 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소의 기능성분 함량

**2. 용도 :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가. 해당 제품이 유아식,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라는 표현. 이 경우 특수의로 용도등식품에는 섭취대상자의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다.
- 나.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

**3. 섭취방법·섭취량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의 표현



###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 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
5.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

####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제21조관련)

#####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나. 질병 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질병이 아닌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다.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라.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이하 이 목에서 “질병 정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 1) 법 제1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거나 안전성 및 가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 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서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2) 질병정보를 제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동 질병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등의 표현을 병기한 표시·광고
- 마.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바.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사.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법 제5조부터 법 제7조까지의 규정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1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신고한 사항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
- 다. 정부 또는 관련공인기관의 수상·인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라.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섭취방법, 품질 및 건강 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해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가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 다만, 해당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라.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소·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 마. 비교표시·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한 내용의 표시·광고
- 바.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를 이용한 표시·광고

---

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인체적용 시험 결과 (이하 이 목에서 “인체적용시험결과”라 한다)를 일부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해당 건강 기능식품의 사용 전후를 비교하는 등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 또는 효과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표시·광고. 다만, 인체적용시험결과를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의 경우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에 관한 내용의 표시·광고

#### 5.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표시·광고

---

## 〈본부 수입식품안전정책국〉

과명	전화번호	업무범위
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53	수입식품등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수입식품등 안전관리 법령 및 고시의 제·개정 수입식품등 영업자에 대한 교육명령 및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수입식품등의 영업등록 관련 업무의 총괄
현지실사과	043-719-6210	식품등을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국가에 있는 제조업소 현지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축산물 수입 관련 위생 및 안전 실태조사 수산물 수입 위험평가 총괄 및 조정 해외우수제조업소, 우수수입업소,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등록·관리
수입검사관리과	043-719-2211	수입식품등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 계획 수립 및 조정관리 위해정보 등에 따른 수입식품등 검사항목 지정 등 검사업무의 조정·관리 수입식품영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 운영
수입유통안전과	043-719-6258	수입식품등 유통관리 계획 수립·운영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선정 수입식품등 수거 및 검사계획 수립·관리 수입식품등의 단속계획 수립, 회수관리, 이물조사, 행정제재 등 총괄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명 칭	전화번호	위 치	관할 구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02-2640-143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 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 ·가평군 및 연천군(검사소를 제외한 구역)
강릉수입식품검사소	033-660-5206	강원도 강릉시 공제로 357 (홍제동 1009) 강릉영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층	강원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051-602-62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 14~15층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검사소를 제외한 구역)
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	051-635-6013	부산광역시 동구 총장대로 314	자성대 부두
신선대수입식품검사소	051-627-2401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94 대한통운컨테이너 터미널 1층	신선대 부두
양산수입식품검사소	055-372-6011 ~ 6013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관리공단 양산사옥 5층	양산
신항수입식품검사소	051-831-2150 ~ 2151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로 96-87 부산신항만공사 신항사업소 2층	가덕도 신항만·창원·김해
통영수입식품검사소	055-643-9415 ~ 9417	경남통영시 천대국치길 38 (인평동) 해양과학대학 6호관 1층	통영·거제·사천·진주·합천· 거창·고성·남해·산청·의령· 창녕·하동·함안·함양

명 칭	전화번호	위 치	관할 구역
감천향수입식품검사소	051-253-9077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35 암남동국제수산물도매 시장 회관동 1층 1103호	감천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02-2110-813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인천광역시, 경기도(고양시· 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 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 가평군 및 연천군은 제외한다) (검사소를 제외한 구역)
의왕수입식품검사소	031-999-9500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175	안양·의왕·성남·안산·시흥· 군포·과천·광명
광주수입식품검사소	031-999-9530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900 로얄플라자 4층	광주·여주·이천·양평·하남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	032-460-2450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11호	인천국제공항
평택수입식품검사소	031-999-9550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마린센터 11층	평택·오산·화성·안성(일죽면, 죽산면은 제외한다)·용인(남사면 으로 한정)
인천향수입식품검사소	032-460-2400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인천테크노파크 미추홀타워 9층	인천광역시(인천항, 인천신항)
용인수입식품검사소	031-999-958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 10번길 6-10 휘성빌딩 401호	용인(남사면은 제외한다)·수원· 안성(일죽면, 죽산면으로 한정)
김포수입식품검사소	031-999-9510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욱로 36 경인항 김포터미널 111호	김포·인천광역시 강화군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053-592-713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062-602-1404	광주광역시 북구 침단과기로 176번길 39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검사소를 제외한 구역)

명 칭	전화번호	위 치	관할 구역
광양수입식품검사소	061-792-9815	전남 광양시 향만8로 18-42 광양항자유무역관리원 2층	광양·순천·여수·고흥·곡성· 구례·보성·화순, 전라북도 남원
군산수입식품검사소	063-732-0004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미릉동) 두드림센터 1층 102호	전라북도(남원은 제외한다), 충청남도 서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042-480-872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번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서천제외)